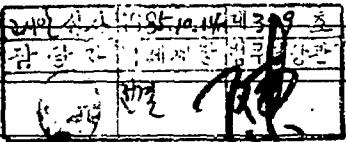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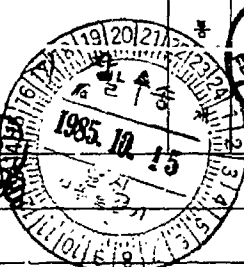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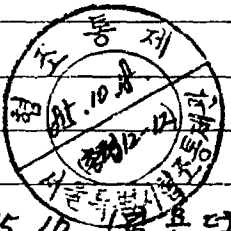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30312-5 <sup>27</sup>	(전화번호 731-6346)	전경규정 4 조 1 항 국 장 전경사항
처리기간	4 장		
시행일자	85. 10		
보존연한	영구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계장	전결 3/10	법무담당관 심사필
기안책임자	조근호 85. 10 (홍윤덕)		
경유	각안 참조		
수신	발송		
참조	고시제 691 호		
제목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제1안 내부결재			
1. 강남구청장으로 부터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84.12.26 (서울시 고시 제786호)로 세부시설 결정된 시장에 대하여 시장 대지 면적 변경없이 시장 건물 면적을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제6조의 규정이 따라 별안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관계서류 1건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고시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호와 제6조 제1항			



에 의거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시는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과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10

서울특별시장

•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부속명	위 치	내 용			비 고
			분 류	당초(㎡)	변경(㎡)	
변경	시장	강남구 논현동 105-7	대지권 시장면적 면	3757 13169.9 (이하·자반)	3757 3273.4 (이하)	면적의 39.79% (이하·자반IP)

• 결정 도면: 변경 도면 표시와 같은 (도면생략)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같은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변경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부사본 및 도면 1부



제4안

수신: 총무처 장관(시: 공보관)

발신: 시(국)장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시)보 게재 의뢰 합니다.

가. 게재 구분: 고시

나. 게재 건명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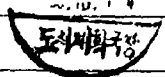
다. 법적 근거 : 도시계획법 제2조 및 준용법 시행령 제6조

라. 게재 내용 : 별첨

첨부 : 고시문 사본 2(1) 부

제5안

수신 : 강남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 음

1. 도정 70714-30077 (2호 9.리) 호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되었기 홍보하나 관계과에 홍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안전을 기하고

3.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 변경시에는 타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행할 것.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제6안

수신 : 수신처참조

발신 : 과장

제목 : 같 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 홍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수신처 : 상공과장 도시계획과장 끝

# 정수대 위치도

SS = 1 : 5000

## 변경 결정지

• 대기면적: 3757 M<sup>2</sup> (변경 없음)

• 시장면적: 13,169 M<sup>2</sup> (24355 M<sup>2</sup>)

역삼동

4164



사            유            서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 위치 : 강남구 논현동 105-7
- 결정일 : 1984. 12. 26 (서울시고시 제786호)
- 규모
  - . 대지면적 : 3,757M<sup>2</sup>
  - . 연 면 적 : 39,026.35M<sup>2</sup> (지하4층, 지상19층)
  - . 시장면적 : 13,169.9M<sup>2</sup> (지하1층,~지상8층)



2. 변경사항

- 요청자 : 영등포구 양평동 106-1 동산토건(주) 고 종 진
- 사유 : 주변에 대형시장(백화점)이 산재해 있어 시장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세부시설 결정된 시장을 축소하여 업무시설(두산  
 그룹계열사사무실)로 사용코자 함.
- 변경내용

구 분	당초 (M <sup>2</sup> )	변경 (M <sup>2</sup> )	비 고
대 지 면 적	3,757	3,757	변경없음
연 면 적	39,026.35	39,739.16	
업무 시설	14,638.36	25,619.44	감)9,896.35M <sup>2</sup>
용도 시 장	13,169.9	3,273.55	
주차장및기계실	11,218.09	10,846.17	

- 관련법규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3호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검토사항

- 시장면적이 3,273.55M<sup>2</sup>로 시장법상 지장없음.

